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 차>

1. 신규 상장법인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자	이름	이지호
	담당부서 (과)	공정시장과		직급	행정전문관
	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88
	과장	최치연		이메일	fsc0143@mail.g o.kr

2024. 05. 13.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신규 상장법인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2.규제조문	자본시장법 제160조제2항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5.20~2024.05.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대부분 신규 상장법인* 등의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등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 * '23년 신규상장 75개사(이전(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등)·재상장·스팩상장사 등 제외) 중 61개사(81%)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미공시 <input type="checkbox"/>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나 일정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상장회사, 투자자 등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상장회사</td> <td></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투자자</td> <td></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장회사		이해관계자	투자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장회사												
이해관계자	투자자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금번 개정안은 신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기업공시는 상장기업 등으로 하여금 증권의 발행유통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 신규 상장법인 등의 경우 관련 규정의 미비로 상장 시기에 따라 6개월간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이 발생 가능한 상황 ○ 이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input type="checkbox"/> 비용측면에서 분·반기 보고서는 기재출중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과 대동소이하므로 피규제자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 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생략)</p> <p><신설></p>	<p>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대부분 신규 상장법인* 등의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등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

* '23년 신규 상장 75개사(이전(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등)·재상장·스팩상장사 등 제외) 중 61개사(81%)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미공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 유지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 상장 직후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정보와 상장 이후 처음 제출하는 분·반기보고서간 시차가 있어 합리적 투자판단에 걸림돌
 - 신규 상장법인 등은 최초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금융감독원 등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1.1월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투자자, 상장회사 등	입법예고('21.9.3~10.13)를 통해 의견 수렴	의견 없음	

3. 규제목표

- 공시 사각지대 축소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목적) 기업공시는 상장기업 등으로 하여금 증권의 발행·유통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 신규 상장법인 등의 경우 관련 규정의 미비로 상장 시기에 따라 6개월간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이 발생 가능한 상황
 - 이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매분기 재무 사항 등을 form 10-Q*에 따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상장법인이 미SEC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분기보고서를 의미[Section 13 or 15(d)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5 U.S.C. § 78m or § 78o(d))]

- ** 비상장법인의 경우 미국은 등록 주주가 2000명이 넘는 비상장사는 정기적으로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비상장사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무 정기공시 대상이 되는 비상장 회사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중('22.1월, 글로벌 경제신문 - 美 SEC, 비상장사 정기공시 의무 확대 추진 관련 기사)

- 신규 상장법인 등은 Registration Statement*를 통해 등록일 90일 전 이내의 재무상태표, 과거 3개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증권신고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Registration Statement를 통해 기업재무 제표 등을 공개하고 유효하게 등록하여야 함[Section 12(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5 U.S.C. § 78l(b))]

○ 타법사례

- 현행 자본시장법 제159조제3항은 신규 상장법인 등에 대해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사업보고서 제출 기간 중인 경우 그 제출 기한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되,
-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아울러, 기업 대상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화 사례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공시 의무화* 제도(자본시장법 제33조)가 있으며,
 -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업집단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분기별 포괄적 정보 공시 의무화* 사례가 있음(공정거래법 제28조)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함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분·반기 보고서는 기재출중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과 대동소이하므로 피규제자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규제는 시장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의 안정적 투자기회가 확대되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외 경영환경도 급변하면서 기업·투자자간 소통채널로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 투자판단에 필요한 공시를 확대하여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공시의무는 완화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21.1월)하였음
- ※ 동 개정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2.12월 국회에 제출되었음

2. 향후 평가계획

- 신규 상장법인 등의 발행·유통공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시로 점검할 계획

3. 종합결론

- 금번 개정안은 신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